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269호

2015년 11월 20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조 례

○ 조 례 제130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조 례 제1310호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법규상담시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	5
○ 조 례 제131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
○ 조 례 제131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9
○ 조 례 제131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 조 례 제131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 조 례 제131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 조 례 제131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
○ 조 례 제131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23
○ 조 례 제131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 조 례 제131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31

공 고

○ 공고 제2015- 1744호	공유재산변상금 독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요청	47
○ 공고 제2015- 1754호	장기미반환 건설기계 공매 공고(3차)	48
○ 공고 제2015- 1757호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53
○ 공고 제2015- 1758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남동경기장 노유자시설 설치]사업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54
○ 남동구보 건소 공고 제2015- 83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56

고 시

○ 고시 제2015- 164호	도로명주소 고시	57
------------------	----------	----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11월 20일

남동구 조례 제130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때에는 이를 입법예고하여야”를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하는 때에는”을 “할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에 의한다”를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다”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후단에 따라”로,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7조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에 따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강구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입법예고 예외사유 「행정절차법」에 맞게 개정 : (제7조제1항)
- 공청회 개최 사항의 「행정절차법」 가지조문 열거 : (제13조제3항)
- 당연히 적용되는 상위법령 준용 조항 삭제 : (현행 제22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 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11월 20일

남동구 조례 제1310호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 폐지이유

- 인터넷 등의 발달로 전문 법률상담과 해석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법제처의 손쉬운 이용이 가능하여 현재 상담 실적이 전혀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이므로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함 (본문)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11월 20일

남동구 조례 제131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부터 제14항”을 각각 “제1호부터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를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를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로 하고, “제2조제10호의 감리원이”를 “제2조제9호의 건설기술용역업자가”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제명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임금지불서약서' 제출의무를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제명 및 조항 변경 (제2조제11호)
- 감리원을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변경 (제2조제11호)
- ①, ② 등 항 표시를, 1. 2. 와 같이 호로 정비 (제2조)
- 계약상대자의 임금지불서약서 제출 조항 삭제 (현행 제9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11월 20일

남동구 조례 제131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강구하고”를 “마련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구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남동구의회의장의”를 “남동구의회”로 한다.

제15조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1(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안정성 및 이율”을 “안정성 및 이자율”로 한다.

제24조 중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를 “재무회계 관련 사항은 구청장이 재무회계에 관하여 정한 바에 따른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문화예술진흥 위원회 위원 구성 추천자 변경(의장 → 의회)(제8조)
-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제15조1)
- 하위법령 준용 기준 정비(제24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11월 20일

남동구 조례 제131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전단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조례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에 이를 반영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근거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제1조)
- 위원 위촉 대상 중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삭제함 (현행 제2조제3항3호)
-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위원을 남동구 지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삭제함 (현행 제2조제4항)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11월 20일

남동구 조례 제131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0조 규정”을 “제30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국장이 된다.”를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속 동장. 단, 동장의 경우 재적위원의 수를 1명으로 하되, 회의에 참석할 대상은 해당 사업지구가 속한 동장으로 하며 2개 이상의 행정동의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한다.”를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으로 한다.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 상위법에 맞추어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 기준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구성 기준 개정(제3조제3항)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속 동장 ⇒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 재적위원의 구성 및 임기 등을 명확하게 규정(제4조)
 - 연임 ⇒ 2회에 한하여 연임
 -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시 신임 위원의 임기 규정 삭제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11월 20일

남동구 조례 제131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제31조 규정”을 “제31조”로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국장이 된다”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적소관청”을 “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지적소관청”을 “인천광역시 남동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각 사업지구의 동장. 단, 동장의 경우 재적위원의 수를 1명으로 하되, 회의에 참석할 대상은 해당

사업지구가 속한 동장으로 하며 2개 이상의 행정동의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한다.”를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으로 한다.

제4조 중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를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제1항 중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을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 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상위법에 맞추어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여 구 조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규정 삭제(현행 제2조제3호 및 제4호)
 - 지적재조사 측량 시 발생하는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권고
 - 그 밖에 지적재조사 측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상위법령 불일치 규정 정비(제3조제3항)
 - 위원회 위원 구성을 명확하게 규정
- 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 등을 명확하게 규정(제4조)
 - 연임 ⇒ 2회에 한하여 연임
- 위원회 개최 시 개의·의결요건을 명확하게 규정 변경(제9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또는 의결토록 함.
- 위원회 운영상 불합리한 규정 삭제(현행 제10조제2항, 제3항, 제11조)
 - 위원회의 회의·의견청취 및 회의록 작성 등 법령과 중복되거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규정 일부 삭제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11월 20일

남동구 조례 제131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1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51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의제3호 및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작성하여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를 “작성 · 비치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상위법에 맞추어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규정 삭제(제2조제3호 및 제6호)
 -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 종료시점지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운영의 불합리한 규정 변경(제10조제1항)
 - “회의록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 규정 삭제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11월 20일

남동구 조례 제131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의 범위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기간이 남동구에 6개월 이상인 자 중 소득수준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장을 받지 못하는 자로 한다.

제3조(지원내용) ① 지원내용은 생계비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지원내용에 관한 세부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① 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청장에게 이 조례

에 의한 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원신청은 법에 의한 급여신청과 병행하여 신청한다.

제5조(조사 및 결정)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자의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을 법에 준용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4조의 신청에 대한 지원 실시여부를 지원신청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신청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4항 제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7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① 지원은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전으로 지급한다.

② 지원은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지원하며, 매월 가구단위로 지급한다.

제7조(지원중지)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
2.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때

제8조(환수 등) 구청장은 제7조 제1호에 의한 때에는 지원받은 비용을 환수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보장비용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01.01부터 시행한다.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으로 맞춤형급여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기준에 맞지 않아 기초생활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저소득 구민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 이러한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및 예산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업의 목적 및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정함 (제1조 ~ 제2조)
- 지원내용 및 조사, 결정, 지원방법에 관하여 정함 (제3조 ~ 제6조)
- 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하여 정함 (제7조 ~ 제8조)
- 시행규칙 관련 사항을 정함 (제9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11월 20일

남동구 조례 제1318호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우선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등이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공시설"이라 함은”을 “"공공시설"이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투자기관”을 “지방공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매점"이라 함은”을 “"매점"이란”으로, “판매하는 바닥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을 “판매하는”으로 한다.

제4조 중 “또는 투자기관의 장(이하 "기관의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한”을 “또는 구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을 “공고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으로, “또는 기관”을 “또는 구 지방공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또는 기관”을 “또는 구 지방공기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또는 기관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과 우선하여 계약하여야”를 “또는 구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과 우선하여 계약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으로, “또는 기관”을 “또는 구 지방공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으로, “또는 기관”을 “또는 구 지방공기업”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또는 기관”을 “또는 구 지방공기업”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계약해지) 설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매점 및 자동 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 순위 (제2조 및 제6조 관련)

순위	장 애 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1	장애등급이 1~2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u>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u>	70세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u>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u>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u>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u>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u>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u>	<u>장애인</u>
2	장애등급이 3~4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u>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u> 또는 미과세대상자	65세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u>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u>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u>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u> 이외의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u>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u> 이외의 자	<u>부자가정 또는 모자가정</u>
3	장애등급이 5~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u>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u> 또는 미과세대상자				<u>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u>
4					<u>55세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u>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계약해지 조항을 정비하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에 의한 관련 조항 및 대상자 범위 추가(제1조, 제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매점관련 사항 개정으로 매점의 규모 제한 삭제(제2조3)
- 구 투자기관의 의미 명확화(제4조, 제5조, 제6조)
- 계약해지 관련 조항 정비 (제8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의 범위를 벗어난 계약해지 규정 정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별표)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11월 20일

남동구 조례 제131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브랜드의 사용권 부여 및 홍보, 육성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브랜드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이미지 제고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및 국내외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브랜드(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라 함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남동구”라 한다)의 정체성 확보 및 관내 중소기업 제품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표법 제9조에 따라 남동구 명의로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2. 약정제품이라 함은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하여 선정된 해당 제품을 말한다.

제3조(공동브랜드 명칭 및 도안) 공동브랜드 명칭 및 도안은 [별표]와 같다.

제2장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제4조(설치) 공동브랜드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브랜드 사용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심의
2. 약정제품 지원 등 공동브랜드 육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담당과장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공동브랜드 지원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학계, 경영계, 현장전문가 등)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브랜드 지원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다.

제8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한 경우
2. 질병, 사망 또는 기타 사유 등으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4. 기업의 특허, 인증, 기술 등을 유출 또는 도용하여 기업과의 분쟁을 야기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 업무에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사용대상 선정 및 관리 운영

제10조(사용대상) 공동브랜드 사용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1. 남동구 관내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2. 남동구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특허 또는 상표권을 보유한 제품을 자사에서 직접 구입한 원재료를 제공하여 타 지역 또는 외국에서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으로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제11조(업체 및 제품 선정) ① 기업역량, 기술성, 재무건전성, 품질관리 등 업

체 및 제품의 선정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참여업체(제품)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하되,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남동구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남동구 공동브랜드 사용 약정서[별지 제2호 서식]

③ 구청장은 신청서 및 약정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심의토록 하며, 필요시 전문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선정제외) 산업재해 및 노사분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제13조(공동브랜드 사용) 공동브랜드 사용업체는 신의와 성실로 사용약정을 준수하여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기간) ① 약정제품의 공동브랜드 사용은 남동구와 약정한 날로부터 자격을 가지며, 사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사용기간이 만료된 자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재신청 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공동브랜드 약정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사용업체는 14일 이내에 시정하고 그 경위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검사에 따른 수수료는 사용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브랜드 약정제품에 대한 조사 시 품질검사를 관련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단, Q마크 등 공인기관의 품질보증을 받고 있는 품목이거나 해당품목에 대하여 1년 이내에 실시한 공인기관 검사결과서를 보

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사용권 취소) 구청장은 공동브랜드 사용업체(제품)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브랜드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업, 폐업, 부도 등으로 약정제품의 생산이 어려운 경우
2. 사용약정을 위반하여 공동브랜드의 이미지를 훼손한 경우
3. 제15조에 따른 구청장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공동브랜드의 법적보호) 구청장은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을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공동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사용하는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육성 등) ① 구청장은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동브랜드 사용업체에 대하여 남동구에서 실시하는 자금지원 등 각종 시책추진 시 우대할 수 있다.

③ 공동브랜드 사용업체는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공동브랜드의 홍보·육성 관리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동브랜드 사용업체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업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브랜드 명칭

- 한글 : 남동GO / 영문 : Nadogo
(국내용) (해외용)

※ 의미 : 좋은 품질과 서비스를 통해 세계로 뻗어 나가는
남동구와 남동구 중소기업의 비전을 강조하는
안으로 남동구와 기업이 함께 동반 성장하여 간다는
의미의 표현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브랜드 도안

국 내 용	국 외 용
	

[별지 제1호 서식]

남동구 공동브랜드 남동GO(Nadogo) 사용 참가신청서

기업명			설립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홈페이지					연락처			
						생년월일		
구분	(우편번호)	소재지		담당자	성명(직함)			
본사	()				전화번호			
공장	()				핸드폰			
					이메일			
							팩스	
주요생산품						종업원수	총명(남 , 여)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상 3개월 평균)	
*KSIC코드								
자본금		백만원	연매출액	백만원 (2014년 기준)	수출액	USD (2014년 기준)		
공장규모		공장소유		공장용도지역		공장등록		
부지면적	평 평	가 () 임차 ()	공단지역(),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기타()			등록(), 무등록() 이전조건부등록()		
남동구 공동브랜드 남동GO(Nadogo) 참여제품으로 지정 받고자 별첨과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필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최근 3년간 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각 1부
3. 신청기업 및 제품현황

[보유시]

4. 기타 증빙서류(수출실적확인 및 증명발급(최근 2년), 산업재산권, 참여희망 제품 관련 규격 및 품질인증서, 카탈로그 등)

* KSI코드 조회 방법 :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 접속

통계청 [핵심서비스](#)>통계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검색(예: 의류제조(내의) -> 14120)

신청기업 및 제품 현황

1. 일반현황

가. 기업체 연혁

연월일	주요사항	비고

※회사설립부터 현재까지 주요변동사항 기재(설립,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공장이전 등)

나. 대표자 관련사항

성명			자택전화번호	
최종 학력	기간	학교명	전공분야	수학상태
	~			졸업·중퇴
경 력	기간		주생산품	담당업무(직위)
	~			
	~			
	~			
	~			
	~			
	~			

2. 제품소개 및 매출실적

가. 신청제품 소개

제품명 (생산기간)	특성 및 용도	판매가
	※복수의 경우, 칸을 복사하여 기입	

나. 주요납품(판매)처

주요납품(판매)처	연간납품(판매)액	결제조건(방법)	매출비중(%)

※ 내수판매 및 수출국 기재

다. 기업 주요제품의 최근 2년간 매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내수	고정거래처		
	기타 판매		
	소계		
수출			
계			

3. 신청제품의 산업재산권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등

가. 신청제품의 규격(품질)표시 획득 현황

규격표시명	허가(승인)품목	허가(승인)번호	승인기관	허가(승인)일자

※규격(품질)표시명 : ① ISO, KS, JIS, UL 등 국내·외 규격 ② KT·NT 마크
③ 검·Q 마크 등 품질인증 ④ 전·열등 형식 승인 ⑤ 기타

나. 신청제품의 산업재산권 등록현황

종류	고안의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	발명자 (고안자)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자	전용 사용권자

※종류 : 발명특허, 실용신안권등록, 의장권등록, 상표권등록 등

다. 분야별 전문인력 보유현황

직위	성명	최종학력	전공분야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기타

※당해업체 영위업종과 관련 있는 전공(기술, 디자인, 품질관리, 소비자 응대 등) 또는 기술자격 기재

라. 생산설비 보유현황

설비명	규격	수량	설치년도	제작자	비고

※ 시험설비 포함

[별지 제2호 서식]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브랜드 남동GO(Nadogo) -

사 용 약 정 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_____대표(대표이사) (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남동GO(Nadogo)" 상표권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 1 조 (약정목적)

본 약정은 "갑"과 "을"간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브랜드 "남동GO(Nadogo)"의 사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브랜드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상표 사용권 허용)

- ① "갑"은 "남동GO(Nadogo)" 상표의 사용약정기간 (이하 "약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약정서에 허용된 조건하 에서 상표 사용 권리를 "을"에게 허용하며 "을"은 이를 타인(사)에게 양도하거나 재 허용 할 수 없다.
- ② "을"은 약정기간 중 상표사용 적용 대상 제품(이하 "약정제품"이라 한다)의 성실한 제조와 품질향상, 기술, 디자인 개발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 3 조 (약정제품)

- ① 약정제품 :
- ② 1항에 명시된 제품에 한하여 "남동GO(Nadogo)" 상표를 부착 판매 할 수 있다.
- ③ 약정제품 상품은 생산설비 시스템을 갖추고 또한 기술적으로 전문성을 겸비한 참여기업이 약정일 이후에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 ④ 약정 제품간에 상호 분쟁이 있는 경우 "갑"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심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제 4 조 (상표 사용)

- ① "을"은 "남동GO(Nadogo)" 상표에 대한 이미지 정립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신뢰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을"은 "남동GO(Nadogo)"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갑"이 제공하거나 쌍방이 합의한 로고, 마크 타입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 ③ "을"은 약정제품에 필요한 모든 TAG, 라벨, 포장물 및 광고물, 판촉물 등에 "남동GO(Nadogo)"상표를 사용할 경우 "갑"에게 사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약정 기간)

- ① 본 약정서의 약정기간은 약정일로부터 2년까지로 한다.

제 6 조 (광고 및 판촉)

- ① "을"이 약정된 제품에 대한 선전 및 광고를 할 경우에는 "남동GO(Nadogo)" 브랜드의 이미지와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을"은 본 약정기간 동안 각종 광고매체를 통해 약정 제품에 대한 광고 및 시장개척활동 등을 통한 판로확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갑"은 "을"이 브랜드 이미지에 저촉되는 광고 또는 판촉 활동을 한다고 판단될 경우 "을"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 7 조 (판로개척)

- ① "을"은 약정 제품의 국내 판매장소로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유통매장, 전문 전시 판매장, 대리점 및 특약점, 일반 잡화상점 등에 한하여 판매 할 수 있으며, 노점 판매를 할 수 없다.
- ②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시 "을"의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판로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조 (제조 및 품질관리)

- ① "을"은 본 약정에 적용되는 제품과 그 제품포장이 "남동GO(Nadogo)" 상표의 이미지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 모양, 개성 등을 갖추고 최고의 품질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② "갑"은 "을"이 "남동GO(Nadogo)" 상표로 판매하고자 하는 모든 제품의 견본이나 원본을 수거하여 정부 공인품질검사기관에서 품질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고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단, 품질검사에 따른 수수료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 ③ "갑"이 품질검사 결과 "을"이 제시한 견본이나 원본의 품질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는 동 제품에 대한 "남동GO(Nadogo)" 상표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 ④ 본 약정제품의 제조,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하자 및 소비자 피해 사항은 전적으로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 9 조 (검사 및 시정요구 등)

- ① "갑"은 약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을"의 사무소, 사업장, 창고, 또는 판매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 제품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요구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갑"은 제1항의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을"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 10 조 (약정의 해지)

- ①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본 약정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 1. "을"이 제2조 제1항 및 제3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 2. "을"이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3. "을"이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4. "을"이 제7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 5. "을"이 제8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6. "을"이 제9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 7. 기타 "을"이 본 약정을 위반하여 브랜드 이미지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끼쳤을 경우
- ② "갑"은 "을"이 폐업, 부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와 "을"이 특별한 사유 없이 3월이상 사업을 중단하거나 약정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경우, 약정 해지의사를 표명할 경우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을”을 제외한 남동GO(Nadogo) 상표 사용권 허용 업체의 과반수 이상이 “을”의 약정 해지를 요청한 경우 본 약정을 해지 할 수 있다.

제 11 조 (약정기간 만료 또는 해지의 효과)

- ① 본 약정기간 만료 또는 해지 이후에는 본 약정에 따라 "을"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는 "갑"에게 즉시 귀속된다.

- ② 본 약정이 만료된 후 "을"은 제품의 제조, 판매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남동GO(Nadogo)" 상표나 기타 동 상표에 관한 표현 또는 이미지를 모방하거나 기만적으로 이와 유사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 ③ 본 약정의 해지 통보일로부터 "갑"과 "을"은 공동으로 남동GO(Nadogo) 브랜드 부착품 수량 조사를 실시하여 재고품 명세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하고, 남동구 브랜드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제 12 조 (기타 사항)

- ① 본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제반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르며 "을"은 신의와 성실로 본 약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공동브랜드 남동GO(Nadogo) 발전을 위하여 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② "을"이 컨소시엄일 경우 컨소시엄 참여사 모두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브랜드남동GO(Nadogo) 육성사업을 공동이행할 경우에만 본 약정이 유효하다.

제 13 조 (약정의 합의)

"갑"과 "을"은 본 약정 사항을 준수키로 합의하고 이를 인증하기 위하여 각각 서명 날인한다.

20 . . .

"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을" _____ 대표(대표이사)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 남동구 정체성 확보 및 관내 우수기업 제품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공동브랜드 개발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공동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내수·수출시장 개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공동브랜드 명칭 및 도안(제1조 ~ 제3조)
-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제4조~제9조)
- 사용대상 선정 및 관리 운영(제10조~제18조)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15-1744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독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11. 1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제 목 :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독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15. 11. 13. ~ 2015. 11. 30.(17일간)

공고대상 : 김**

기 타 : 위 공고문에 대하여 기타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과 재산관리팀(☎ 032-453-22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 소	세목	과세 년월	부과금액	반송사유
김**	인천 남구 경인남길 30번길 **-**	변상금 및 연체료	2015	1,567,300	폐문부재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754호

장기미반환 건설기계 공매 공고(3차)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및 「도로교통법」 제32조 위반으로 견인되어 반
환통지 등 조치 후 1개월 이상 보관중인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
34조의2 제3항, 「도로교통법」 제35조 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매각)하고자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매각대상물건(건설기계) : 덤프트럭 1대(차량조회 목록참조)

2. 공매공고일정

가. 입찰신청 및 보증금 납부기간 : 2015년 11월 17일 - 2015년 11월 25일 24시
(입찰하고자 하는 분은 이 시간까지 입찰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입금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입찰참여(입찰가 등록) 마감일시 : 2015년 11월 25일 24시

다. 공매결과 및 매각결정 공고일시 : 2015년 11월 26일 14시

※ 오토마트 인터넷공매(www.automart.co.kr) 해당 기관의 [결과조회]에 게시
라. 배분요구 종기일 : 2015. 11. 26.

※ 유찰시 이후 입찰일정은 개찰이후 별도 공고합니다.(다음 회차 입찰공고와
동시 가능)

※ 오토마트 전산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이 연기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 견인차량보관소 : 인천 연수구 능허대로124번길 26(인천폐차사업소)

※ 답사시간 : AM 10:00 ~ PM 17:00 (월~금) 공휴일 제외

3. 공매방법: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경쟁 입찰방식 적용

4. 입찰참가 및 등록 방법

가.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www.automart.co.kr) 입찰방법은 입찰신청 또는 입찰참여에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 가능하고 입찰가를 등록하여야만 입찰이 완료됩니다.

나. 마감기간 안에 입찰신청을 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입찰가격의 10/100 이상으로 직접 설정하고 설정한 보증금의 합계금액으로 입금합니다. (입찰보증금과 입찰가액은 한번 제출된 이후에는 금액을 변경하거나 취소가 불가합니다.)

다. 입찰 차량에 대한 입찰권한은 마감 기한 내에 아래 계좌에 입찰보증금을 입금해야 부여되며, 입금자 명의를 입찰등록자명의로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납부 기한내 미납시 또는 타인명의 입금시 입찰참가자격을 취소합니다.

☞ 입금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23-701983 예금주 : 남동구청

※ 은행 업무시간외(휴일 또는 오후 10시 ~ 오전 9시)에는 입금이 안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미입금은 입찰자 책임으로 미납처리 됩니다.

라. 매각발표후 유찰자의 입찰보증금과 입찰후 공매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의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를 제출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개찰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이자 없이 환불(계좌이체)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마. 낙찰된 자의 입찰보증금은 전액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되므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바. LPG승용(7인승미만) 자동차는 관계법령(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40조)에 의하여 승인된 자만이 입찰에 응할 수 있으므로 입찰시 취득가능한 자 명의로 입찰하여야 합니다.(만약 공동명의로 등록 시 반드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국가유공자) 1인에 1대만 등록 가능하여 기존 장애인(국가유공자) LPG차량은 처분해야만 등록가능). 다만, 장애인(국가유공자) 소유기간이 5년이 지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예정가격 : 감정에 의해 결정된 당해 회차 공매최저가격임

6. 낙찰자 결정기준

가.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입찰금액이 최고액인 입찰자.(단, 체납자 및 국세징수법 제66조 및 동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자격이 제한된 자가 아닌자)

- 나. 최고 입찰금액이 2인 이상 동일한 경우 입찰가의 선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 입찰자는 입찰권한이(보증금 납부) 있는 자로서 단독입찰 가능
라. 공매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국세징수법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
매수를 신고할 경우 최고가 입찰자에 상관없이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습니다.

7. 대금납부기한 :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 가. 낙찰자는 해당 납부기한까지 잔(대)금을 전액 완납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
할 경우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은 채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 가산금 순으로 충당하며 해당 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나. 잔금 입금계좌는 입찰보증금 입금계좌와 상이할 수도 있으므로, 낙찰시 우리
구 공매담당자에게 입금계좌를 확인 후 낙찰자 명의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8.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및 인도절차 등

- 가.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납부 후 우리 구로 잔금 납부를 통보해야 하며, 관련
서류 제출 및 매각대금을 완납한 낙찰자에 한하여 우리 구에서 해당 건설
기계등록기관으로 권리이전등록을 촉탁하오니 낙찰자께서는 촉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권리이전 등록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나. 낙찰 받은 차량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기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의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에 따르는 제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 번호판이 없는 차량은 낙찰자가 영치부서에서 번호판을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라. 이전 후 1개월 이내 차량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을 임의처분(재공매)
합니다.
마. 공매물건은 소유권 이전등록 후 차량보관소(인천폐차사업소)에서 인도되며
(관계서류 지참), 운반과 그 운반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바. 정기검사기간을 경과한 차량을 경락받은 경우 이전등록 촉탁일로부터 15일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정밀검사 해당 여부를 필히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만일, 이전등록 및 검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과태료 등을 부담하게 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건설기계등록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9. 공매의 취소, 중지 및 매각결정취소

- 가. 매각진행 중 계약체결 전까지 차량소유자 또는 운전자 등이 제비용 모두를 납부하였거나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공매중지 또는 매각결정취소를 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최고액 입찰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다. 매각결정기일 전에 공매재산의 공유자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최고입찰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경우 공유자에게 매각결정 하고, 우선매수 신고한 공유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최고액의 입찰자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0. 공매물건의 하자책임 및 위험부담의 이전시기 등

- 가.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상의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차량점검서의 내용에 불구하고 입찰자 본인의 책임하에 공부확인 및 현지답사, 보관소 방문 등을 통해 반드시 직접 물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나. 매수대금 납부 후 그 매각물건에 생긴 소실, 훼손, 도난, 기능상 이상유무 등 위험은 그 물건의 이전 등록여부, 현실의 인도유무에 불구하고 낙찰자의 부담이므로 매수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매각 물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주의사항

- 가. 공매에 따른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의 구입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소득공제 제외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공매물건의 하자, 외관상태 및 주행거리 표기 등에 대하여 우리 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차량 보관소를 입찰자가 직접 방문하여 차량을 면밀히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 입찰하려는 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인터넷 입찰마감 1영업일전까지 우리 구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매각결정은 매각결정기일에 하며, 낙찰자로 결정되더라도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매각결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마. 본 공고상의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 바. 공개매각에 따른 매각불능 차량에 대하여는 폐차처리 합니다.
-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32-453-27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매대상 목록

연번	등록번호	건설기계명	연식	매각예정가액	공매차수	비 고
1	인천06마3725	덤프트럭	2003	16,000,000	3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757호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 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람 공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자 대상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수집된 개인정보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과태료 고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2015. 11. 1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고내용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대상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람
2. 공고기간 : 2015. 11. 16. ~ 11. 30.(14일간)
3.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제공일자 : 2015. 11. 2 ~ 11. 13
5. 제공받는 자 : 아진전산(주)
6. 제공목적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를 위한 OCR 고지서 인쇄
7. 법적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8조제2항 및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8.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납부자의 성명, 주소, 부과대상 차량번호, 고지번호,
납부금액, 가상 계좌번호, 생년월일, 단속일자, 위반장소
9.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OCR 고지서 출력작업 완료시까지
10. 기타 문의사항 : 남동구 교통행정과 (☎ 032-453-2890)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758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남동경기장 노유자시설 설치】사업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남동경기장 노유자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작성 후 열람·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3)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이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5. 11. 20.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00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명 칭 : 남동경기장 [노유자시설(사회복지관)] 설치사업
- 사업 규모
 - 노유자시설 : 사회복지관

층별	용도	면적(m ²)	비고
지하1층	문화및집회시설(관람장)	3,442.23	
지하2층	문화및집회시설(관람장)	4,904.78	
계		8,347.01	
지상1층	문화및집회시설(관람장)	11,393.34	
	노유자시설(사회복지관)	205.84	용도변경
	제2종근생(제조업소)	158.46	
계		11,757.64	
지상2층	문화및집회시설(관람장)	7,284.89	
지상3층	문화및집회시설(관람장)	4,429.39	
계		23,471.92	
합계		31,818.93	

○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번지)

○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 2017. 6.2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종류	성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602	체육용지	67,313.9	67,313.9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해당 없음		

○ 관계 도서 :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 2015-83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처분을 실시하고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3. 공 고 기 간 : 2015. 11. 16. ~ 2015. 11. 30. (15일간)
4.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직권말소일자
일반 음식점	2009-0200175	민속칼국수	김*희	은봉로315번길 4 (논현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4.06.30.	2015.10.23.
	2009-0199869	키즈트리	김*경	논고개로 121 (논현동)		2013.06.30.	2015.10.28.

5. 고 지 사 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 (032)453-2626

2015. 11. 1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 2015-164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108-5 외 7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72번길 39-47 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3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11. 13.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으로 도로명주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 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587-1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108-5	2009.11.16	덕골이라는 옛 지명을 인용하여 제명	2015.11.13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덕골로108-5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108-5를 건물번호로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62-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 로10번길	21-11	2012.3.28	서창남순환로 시작지점에 서부터 약 9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5.11.13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 서창남순환로 10번길21-11번기초구간에위치하여 21-11을건물번호로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55-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 로62번길	42-10	2012.3.28	서창남순환로 시작지점에 서부터 약 61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5.11.13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서창남순환로 62번길42-10번기초구간에위치하여 42-10을건물번호로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3-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98	2009.11.16	옛날에 은이 나왔던 마을 이 있었다는 유래를 인용 하여 제명	2015.11.13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은봉로98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98을건물번호로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129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의골로1 89번길	9	2009.11.16	만의골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 190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5.11.13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만의골로 189번길9번기초구간에위치하여9를 건물번호로부여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666-4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31 번길	7-9	2011.3.24	도림로의 시작지점에서부 터 약 310m지점에서 왼쪽 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5.11.13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도림로31번길 7-9번기초구간에위치하여7-9를 건물번호로부여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8-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 168번길	19	2014.7.25	서창방산로의 시작지점에 서부터 약16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5.11.13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서창방산로 168번길19번기초구간에위치하여 19를건물번호로부여	
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보금 자리주택 지구	D4-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 로55번길	11-6	2014.7.25	선수촌공원로의 시작지점 으로부터 약 560m지점 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 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5.11.13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선수촌공원로 55번길11-6번기초구간에위치하여 11-6을건물번호로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23, -443,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72번길	39-47	2015.10.29.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16-2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62번길	26-1	2015.11.02.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77-6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114번길	61	2015.11.12.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